

“保護法제정 및 유지관리 機關설치를”

方 碩 皓

〈通信開發研究院 情報文化室長〉

◇ 프라이버시 概念의 再照明

프라이버시 개념의 등장과 변천 : 文明의 발전과 더불어 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물질적·신체적인 것에서 지적·情緒的 생활로 이전하는 맥락속에서 별도의 권리로 정착하게 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그 발전의 기원을 英美法에 두고 있다.

비록 獨自의인 權利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이론들을 애용함으로써 간접적·우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英國에서 18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던 것이 프라이버시 권리를 하나의 獨自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Warren & B. Randeis의 1890년의 논문이후 미국에서 독자적인 프라이버시 保護方法이 탄생하기까지는 84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獨自의 權利로서의 인정이후에도 정신적·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개념에 대해 법이 보호를 외면해온 것은 아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民事上 不法行爲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

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보호를 해 주거나 刑法上 명예훼손에 의한 刑事的 처벌을 통한 규제가 아닌 독자적·정신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가 독자의 단행법체계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였다.

인류사회에 있어서 권리의 발달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토지·家屋과 같은 유체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었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산물인 知的所有權과 같은 無體的인 재산권의 개념이 정착하게 되었다. 인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신체의 완전성을 중심으로 폭행·상해등으로부터 보호했으나 그후 정신적인 평온이라는 保護法益을 발전시켜 공갈·협박등에 대한 보호에서 악취·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까지 발전되었다.

여기에서 더 발전한 단계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라는 고도의 정신적 이익의 보호이며 그중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의 훼손에 관한 것이기에 어느정도 客觀性을 견지할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 侵害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感情의 침해이기에 보다 主觀的이며 이의 보호는 일정한 文化水準이 형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다.

예를들면, 村落共同體와 같은 단순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私生活는 共同生活속에 흡수되고 개인과 전체의 구별이 없게된다면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게된다. 반면, 社會構成員의 생활관계가 직업의 분화 등으로 복잡해지고, 個人相互間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게 되면 私生活의 독립이 필요하게 된다. 더우기, 交通통신의 발달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축소되고 인구과실로 인한 밀집사회, 개인이 발가벗긴 채 서 있을 수 있는 신문, 방송 등에 의한 商業主義속에서 개인의 인격감정 침해는 도덕적 보호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탄생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公私의 기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컴퓨터인력정보, 개인정보저장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활용은 내년에 인력이 완료되는 行政電算網의 운영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독자적 보호체계를 요구하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이와같은 문명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게 된 정신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인간이 가지는 사회성과 혼자있고 싶어하는 내면성의 존재때문에 그 파악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처음에 독자적인 법적 권리로 등장하면서 주장되어진 “홀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과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량이 적었고 그것이 분산 운영되고 있었으며, 수집된 정보의 분석이 어려웠고 그 정보에의 접근 또한 용이하지 않았던 시대이나 타당하였지, 개인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공여부까지 결정되는 기록사회(Dossier society), 전산처리되고 온라인화된 개인정보은행(Computerized Personal Data bank) 아래서는 프라이버시가 自己에게 관한 情報의 不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 파악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에 관한 論議를 전개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 개념의 相對性 : 이상과 같은 맥락속에서 파악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우리의 경우 헌법 17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써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권리는 상대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당한 침해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또 금후에도 인정되어 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보호법만이 만들어져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의 금지, 제한이 행하여져도 헌법상 보장되는 다른 法 가치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個人情報保護라는 구실로 國政의 공개를 통해 國政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 법리나 헌법상 또 다른 중요한 기본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한 표현의 自由 法理와 같은 가치들과의 조화로운 운영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다.

우선 情報公開法理와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위치를 보면, 美國에서 1966년에 성립된 정부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관통하는 국민과 정부와의 行政公開를 통한 직접적 교류의 확보,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直接民主主義 구현의 이념들을 둘러싸고 탄생한 1974년의 프라이버시 保護法은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적 영역으로서 탄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4년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행정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情報自由法의 諸 조항에 대한 추가, 보수의 형식으로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情報自由法 가운데 공개원칙에 대한 例外規程들을 더욱 부여하는 역할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立法形式만 보아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情報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공개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兩者가 서로 운영면에서 대립되는 것이 많지만, 前述한

대로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자기에 관한 정보, 지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한다면, 양자는 相互共存의 관계이면서, 오히려 프라이버시 보호의 實益을 위해서는 정보의 公開가 선행이 되어야 함도 생각할 수 있다. 外國의 學說과 判例들도 민주적이고 개방된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정보공개에 方向으로 정책목표가 설정되어 있어도 이의 反射的 効果로써 프라이버시보호가 약해지기 보다는 兩者를 對等한 개념들로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主流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表現의 自由와의 관계는 프라이버시 保護의 限界로써 많이 討議되어져 왔다. 歷史적으로 보면 미국의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버시 保護立法을 마련한 1903년경 뉴욕타임즈 등의 言論界에서 프라이버시 권리 개념의 定着은 곧 표현자유의 제약이라는 이유로 맹렬히 반대하면서 시작된 양자의 긴장관계는 이제는 중요한 憲法問題化되게 되었다.

즉, 1890년 Warren과 Brandeis가 不法行爲法上 독특한 法理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의 독자적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언론기관의 존재자체가 자유민주사회의 제도적 보장을 憲法上 규정됨으로 인해 사생활의 공개, 오해를 낳는 표현 및 私事의 영리적 이용등에 있어서는 그 侵害行爲爲自體에 違法性 또는 犯罪性이 내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侵害行爲에 포함된 가치가 침해될 정당화 할 만큼 중요한 경우가 있기에 兩者의 調和는 자유민주사회에서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상반된 요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言論의 自由에 관한 論議가 제일 발달한 美國에서 이 양자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의 권리보다 상회하는 表現行爲에 포함된 이익이 존재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방해할 수 없다는 공공의 利益(public Interest)의 이론, 소위 有名人은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 비하여 다소 공익적 성질때문에 사생활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사람의 경우 그 사적 사항이 공개되더라도 通常

人에 비하여 受忍해야 할 범위가 넓다는 公的人物(public figure)의 이론 등이 발달되어 왔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가 그어질 수 있는 절대적 기준들은 아니었고 프라이버시 개념의 상대성 즉, 時代와 場所, 주어진 환경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있는 보호가 행하여져야 한다는 주장들의 실제적 반복이었다.

프라이버시 保護對象의 영역: 개인의 情報가 개인의 支配를 떠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영역은 정보의 관리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定型化된 共通項目, 出身地域, 學校, 기타 개인의 경력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의 활용은 특정의 한정된 개인들만 대상으로, 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운용하는 것에 비해 프라이버시의 침해여지가 크므로 그 법적 규제가 요청된다.

이 점에서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한정하는 공공분야, 즉 민간기업등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수집, 운용에 대한 보호의 침묵은 그 규제의 요청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의 보호법이 규제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대체로 法人데이터는 제외시키는 것이 世界立法의 동향인 바, 프라이버시 개념이 우리 憲法上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에 포함되고 유래되기에 앞으로의 保護立法 檢討에서도 法人데이터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이 아닌 다른 법적 보호가 행해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 保護를 위한 規制方案

個人情報蒐集段階에서의 保護: 종래의 재래식 서류체계(manual files) F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장 실효성있는 방법은 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제약을 가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산화되어 온라인 이용이 가능해진 서류체계 F에서의 수집제한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수집된 정보가 상호교환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는 것은 곤란하지만 다른 기관이 권한없이, 데이터뱅크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盜

用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의 강구가 실효성 있는 蒐集制限方法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 전산화된 데이터뱅크 F에서는 자료를 수집한 각 기관의 권한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하게 된다. 따라서 전산화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가를 규제하는 것에 못지않게 수집된 정보를 누가 접근하여 사용하게 되는 가를 규제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蒐集단계에서의 원칙으로서 외국에서 學說과 判例를 통해 定着되어 오고 우리의 경우에도 他山之石이 될 수 있는 것들로서는 ① 정보는 가능한 한 데이터 주체로부터 수집되어야 하며 제3의 文書管理者로부터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데이터 主體의 同意를 먼저 얻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데이터 주체에게 통고하고 法院의 심사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은밀한 전자탐지기구들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거짓말탐지기 역시 사용되어 저서는 안되며 거짓 면접을 통한 정보의 수집도 許容 되지 않는다. ④ 오직 正當한 目的下의 個人情報만이 수집되어야 한다. ⑤ 개인의 刑事記錄이 사적 기관들에 의해 蒐集되어 저서는 안된다. ⑥ 政府는 개인의 正當한 기본권인 언론·출판·집회·결사권리의 행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들이다.

내년 6월에 입력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진 행정전산망의 個人情報資料의 운영에서 먼저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는 통일된 코드르 통한 部處 相互間 情報의 교환일 것이다.

개인의 신상과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재산상황, 병역관계 등 한 개인의 대부분의 인적상황의 파악이 손쉽게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情報의 권한 없는 유출과 흐름이 集權化된 電算網의 이점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의 모색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標準統一番號(Standard Universal Identifier)의 사용에 대해 外國에서도 많은 論難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의 채

용으로 인한 편리함 외에 점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個人情報의 중앙집중으로 인한 管理國家로의 위험성, 地方自治制度의 空洞化의 우려 등이 反對論者들이 주장하는 이유들이다.

美國의 경우도 社會保障番號(Social Security Number)가 運轉免許番號와 함께 본래의 목적외에 이민관계, 취업관계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요구·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個人情報의 貯藏·維持段階에서의 保護: 일단 정보가 수집되어 저장, 유지되면 그것이 소거되기 전에는 권한없는 접근을 통한 유출이라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종래 재래식 서류체계F에서 서류에 저장된 個人정보들을 물리적, 체계적으로 소거하는 것이 기술적 곤란성과 비용의 과다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전산화된 자료들은 "抹消"라는 명령 키보드 하나를 통해 消去시키는 혁신이 가능케 되었다.

하지만, 자료들이 中央集中化 됨에 따라 어떤 기관도 어떤 정보에 대해 後日에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總意的 決定이 있어야 消去가 가능해진다. 이런 기술적 번잡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입력된 자료에 저장기간을 명시해 그 기간동안만 그 정보는 보관됨을 취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도 있다. 일단 수집·저장된 정보에 대해 데이터관리자에게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유지의무의 부과등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꾀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의 接近統制(Access Control)를 통한 보호: 일단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권한없는 정보의 유출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정보의 접근을 통제함으로써만 가능해진다. 이 방법은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을 할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중의 하나이다.

集中化되고 전산화된 情報銀行(data bank)의 存在以前에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재래식의

서류기록체계자체가 권한없는 정보의 유출에 대한 장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첫째로 재래식 서류체계에서 文書記錄을 통한 정보를 찾는 불편함, 둘째로 자료를 구하는 사람과 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과의 지리적 거리감, 셋째로 바라는 정보들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으므로 각 기관들이 함께 접촉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산화된 情報銀行下에서는 일단 권한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더 많은 양의 정보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그 유출의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즉 전산화된 체계하에서도 정보저장단위간 온라인시스템으로 인해 그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곧 全體情報에 대해 누가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를 프로그램해서 입력하면 그러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타 接近統制를 위한 간접적 방법으로 전산화된 정보를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식을 통해 운영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나 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의 불편을 고려하면 그다지 실효성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個人情報의 正確性統制(Accuracy Control)를 통한 보호 : 데이터 管理者에게 수집·저장된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합법성, 현재성등의 維持義務附加를 통한 간접적 방법외에 수집된 데이터의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구체적 지배방법인 情報公開請求權, 訂正權, 轉用禁止請求權의 부여를 통한 방법은 오늘날 프라이버시 保護方法中에서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情報化社會에서 정보에의 소외는 사회생활에의 소외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특히 데이터뱅크에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file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알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자 프라이버시의 적극적인 개념포악에 따른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重要性外에 실제 정책상 채택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제도의 운영비용일 것이

다. 즉 개인에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게 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논쟁의 해결을 위해 청문회 형식으로 된 데이터주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좋은 취지와 함께 비용이라는 점도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美國에서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요청들이 公共機關에서 허락이 된 이후 소수의 사람들—그것도 주로 연방직원들을 중심으로 한—만 이 프라이버시보호법이 보장하는 자기 file의 열람, 복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또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보의 訂正을 요구하거나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美國과는 달리 憲法上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프라이버시權利는 憲法 제10條의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

기타 制度的 補完裝置의 講究 : 情報處理者(P-programmer)가 개인의 買收에 의해 권한 없는 정보의 유출을 피할 위험은 재래식 서류체계와 마찬가지로 전산화된 기록체계에서도 상존하기에 컴퓨터 담당자를 전문직업화 시킴으로써 정보의 권한없는 유출을 도모하는 자는 많은 비용이 들게 하고, 전문화를 통한 책임의식을 고양하든가 重要情報資料에 대해서는 two-man system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국가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적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가 내포하는 중요한 권리의 구체화를 통해 보장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訂正請求權 또는 變更·削除請求權, 個人情報가 수집목적외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중지를 청구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立法을 통해서 오히려 확실히 보호될 수 있고 또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이 글은 지난 10월 27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정보산업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이다.(편집자註)

을 채택하여 共同管理制를 통한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인적인 제도적 보완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 프라이버시 保護立法의 필요성

새로운 立法의 必要性 :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한 憲法上 明文規定을 두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단일한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포괄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보장을 위해서는 이를 분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특히 憲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적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인 구체적 지배권의 행사방법, 내용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보호함이 효과적이라고 判斷되어진다.

보다 구체적 필요성을 살펴보면, 民事上의 프라이버시의 權利救濟를 위해서는 구태여 입법적 준비가 없더라도 현행 民法 751條의 財產以外의 손해배상의 논리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電話盜聽 및 人的 情報의 관리로부터 프라이버시의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現行法制上 별도의 보호입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우리의 경우 전화도청에 의한 증거가 유효한 증거로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고 그것을 감행한 자는 도청행위 그 자체보다는 權利行使妨害, 住居侵入의 책임을 추궁당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이 도청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입법을 만들더라도 데이터보호법을 통한 보호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立法形式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한, 데이터주체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정보가 비밀이면 일수록 데이터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오히려 더욱 침해하게 되며, 데이터보호법의 이념에 충실하여 비밀유지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逆으로, 당해 데이터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점차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保護法의 制定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 :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한 다른 憲法의 가치들과의 충돌, 조화는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또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에의 이해조정은 단일한 기준이 아닌,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성을 지녀야 하기에 이런 目的을 위해 전문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을 두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전문기관은 또한 수집·입력된 개인정보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감독권을 가짐이 요구된다. 특히 部處간 情報의 轉用을 統制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 감독기관이 부처에 상위해야 하고(super agency 的 성격) 그 권한은 광범위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外國의 경우 프라이버시보호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들 중의 하나는 法施行을 위한 감독기관이 최소한 法施行의 효율성을 위한 지침이나 규칙의 작성, 조언, 권고등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의 行政文化속에서 이러한 專門機關의 설치치는 국무총리나 대통령 밑에 설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남는 문제는 데이터의 수집, 입력은 主管部處가 데이터 이용의 목적에 따라 행한다 하여도 이들 데이터의 유지·관리에 대한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부처와 專門機關간의 역할분담에 따른 권한의 조정은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미해결로 남겨질 것 같다.

이상의 문제점외에 특별히 立法化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原則들로 外國의 法制와 判例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도 수용해야 할 것들로 는 먼저,

① 규제의 대상영역을 공공분야에 한정할 것인가? 또는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인가? 대상 데이터의 경우 전산처리된 것에만 한 할 것인가? 아니면 종래의 manual 형태의 개인기록들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원칙들이 그 나라의 프라이버시보호

立法을 위한 사회적 여건의 수용태세에 대한 판단속에서 대답되어야 할 것이다.

② 수집·입력단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기록은 특정의 합리적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개인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공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③ 프라이버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권의 보장과 잘못된 정보의 기록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정확성통제(accuracy control) 권한의 부여라는 원칙도 새로운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④ 또한 개인의 데이터를 작성, 보유, 사용하는 모든 기관은 그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의 의무를 지며 남용, 오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한다. 개인의 정보가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연결할 경우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하여, 정보에의 접근자체를 정당한 권한있는 자에게 한정지우고, 정보를 처리한 자에게는 知得한 개인정보의 비밀엄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맺음 말

종래의 재래식 文書記錄體系에서 정보의 권한 없는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고안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特定有形的 기록이나 特定部處에 있어서의 개별적 차원에서 고안된 규제방

법들이었기에 그 결과는 매우 단편적이었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지침의 위반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책임있는 기관에 의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하여 中央集中化된 전산체계하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나 장치들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다루는 것이 인간인 이상 정보의 유출은 발생하게 마련이고 권한없는 정보에의 침입을 막는 기술적 장치에도 그 한계가 있게 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권한없는 정보의 유출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된 정보의 활용이 갖는 이점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충분히 규제하느냐에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이를 위한 制度的 틀로서의 프라이버시 保護法의 제정을 통해 이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정부부처간의 데이터 유지·관리를 감독하는 專門機關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정보에의 接近權·統制權을 부여하여 알 권리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情報交換이나 데이터뱅크의 구축에 따른 잘못은 美國에서도 그 비율이 약1%정도로 항상 뒤따르게 마련이기에 이에 대한 對策도 앞으로의 프라이버시 保護立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료처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자료의 記入時 정확도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는 여지가 많은 社會環境속에는 기본적으로 자료취급에 대한 사회적인 훈련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병행 추진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별의 뇌에서
바이오센서 開發

Biosensors Group of University College Cardiff Consultants 사는, 별의 뇌의 세밀한 조사에 14년을 소비한 끝에, 마침내 실

리곤 칩에 바탕을 둔 일련의 미세한 마이크로프로브(微量分析裝置)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생물공학이사회의 후원으로 로버트 피커드 교수가 설립한 이 그룹은, 현재 이 새로

운 개발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장차 이 장치는 근육이나 신경에서 오는 전기신호의 기록, 방사선 치료의 적기를 확인하기 위한 암세포의 산소소비량 측정 등에 사용될 것이다.